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64호 |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규 칙

- 미추홀구 규칙 제105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미추홀구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8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2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2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3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5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1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6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65호 『용현동 89-3번지 외 12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97
- 미추홀구 고시 제2026-66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2BL』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98
- 미추홀구 고시 제2026-67호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99
- 미추홀구 고시 제2026-68호 「주안 2·4동 재정비 촉진지구」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106
- 미추홀구 고시 제2026-69호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109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변경 및 신규 지정 공고 111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66호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11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74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성락아파트) 11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75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태화아파트) 116

회 란								
-----	--	--	--	--	--	--	--	--

규 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공포)****1. 규칙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약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비(안 제1조, 제4조)
- 용어의 정의 및 중복, 모호한 표현 정비(안 제2조, 제5조~제7조, 제13조)
- 공약 추진 및 평가 절차 체계화
 -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정비(안 제6조, 제7조)
 - 이행실적 관리 절차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안 제8조, 제9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기준 및 단장의 역할 명시(안 제10조)
 -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 강화(안 제11조, 제12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권한대행
부 구 청 장

시 현 정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105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로, “규정함”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을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으로, “사항을”을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确定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약사업”을 “공약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추진하는”을 “공약사업을 추진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의”를 “제1항과 관련한 구민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부서”를 “주관부서 등”으로, “사업별로”를 “공약사업별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약사업의 확정)”을 “(공약사항의 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거과정”을 “선거 과정”으로, “공약사업안”을 “공약사항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을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하여”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별로 검토”를 “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 소요액”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부서에서는”을 “총괄부서의 장은”으로, “공약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주관부서와”를 “주관부서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약사업별”을 “공약사항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추진계획 수립)”을 “(실천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1항”으로, “추진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계획과 상충 여부”를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재원조달 대책”을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 공약사항”을 “필요한 공약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부서의 추진계

획”을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를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로 한다.

1. 공약사항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4. 연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제7조의 제목 “(추진계획 변경)”을 “(실천계획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이”를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제6조에 따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를 “총괄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으로, “변경된 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행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등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이행 점검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을 “객관적이고 투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 중”을 “단원이”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공약이행평가단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2. 공약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제12조제1항 중 “공약이행”을 “평가단의 공약이행”으로, “매년 1월, 7월 실시하
되”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로,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를
“현장을 확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공무원,
전문가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을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으로, “추진상황,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이행실적, 공약이행 평가 결과”로
한다.

제14조 중 “공약이행평가”를 “공약이행 평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공포)

1. 규칙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명칭 및 배점 일부변경
 -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7점)로 변경하고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1점)를 삭제
-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일부변경
 -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순위 간 점수 편차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권한대행
부 구 청 장

시 현 정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소 계	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자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7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	
3. 구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그 밖에 사항	소 계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별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I. 기본원칙

1.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1-가 및 나.의 경우는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2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안 제5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처

가)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나) 전화번호: 032-880-4558 (FAX 032-880-4896)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안 제5조의2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8항
-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6. 5. 18. ~ 6. 8.
- 2) 입법선행절차
 - 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다) 성별영향평가: 절차완료
 -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및 별표3의2”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89조제2항제4호”를 “법 제89조제2항제4호”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및 별표3의2</u> 규정에 따라 D 또는 E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제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3. 「 <u>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 」 별표 3의 ----- ----- ----- ----- -----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u>법89조 제2항제4호</u>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u>한국시설안전공단</u> 또는 <u>주택관리사단체</u> 에 위탁하여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u>법 제89조제2항제4호</u> ----- ----- ----- ----- ----- ----- <u>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u>

시행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u>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법인---</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제34조----- -----. ⑤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도시재생국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참고 1**현행 법령 발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참고 2**현행 조례 발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법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2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완화

- (안 제3조제1항)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3)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처

가)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나) 전화번호: 032-880-4558 (FAX 032-880-4896)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완화

- (안 제3조제1항)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5. 18.~6. 8.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절차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로, “3”을 “2”로,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 <u>감사요청서</u> ” <별지 제1호 서식> 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 <u>요청인 연명부</u> ” <별지 제2호 서식>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① ----- ----- ----- ----- <u>별지 제1호서</u> <u>식의 감사요청서</u> ----- ----- 2 ----- ----- <u>별지 제2호서식의 요</u> <u>청인 연명부</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생략)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u>전문감사관의 자문</u> 을 받을 수 있다.	② ----- ----- -- <u>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하여 그</u> <u>의견</u> ----- ----- -.
제8조(감사의 실시) ①·② (생략)	제8조(감사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u>감사 결과보고서</u>”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u>1회에 한하여</u>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u>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u>-----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한 차례만</u>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도시재생국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참고 1**현행 법령 발췌****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참고 2**현행 조례 발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3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기관의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반영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도화동)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2-880-5416 (FAX: 032-880-547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기관의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반영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5. 18.(월) ~ 6. 8.(월)

나) 예고결과: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2026. 5월 중
- 다) 부패영향평가: 2026. 5월 중
- 라) 인권영향평가: 2026. 5월 중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1조 (생략)	제7조 ~ 제10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6. 4. 6.)되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개공지'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등

라. 제출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우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도화동)
- 전화번호: 032-880-5413 (FAX 032-880-5400)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6. 4. 6.)되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개공지'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건축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5. 18.(월) ~ 6. 8.(월)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완료

다)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완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미추홀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건물명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소			
대상시설 (공개공지)	⑥ 명칭			
	⑦ 소재지			
	⑧ 연면적(m ²)			
	⑨ 전체 소유자 (인원수 기재)	명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조사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① 건 물 명	
	② 소 재 지	
	③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u> <u>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u> <u>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u> <u>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u> <u>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u>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미추홀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붙임 1

관련 법령(발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9.11.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9.11.11.>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개정 2019.11.11, 2022.10.17.>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19.11.11.>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9.11.11, 2022.10.17.>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개정 2019.11.11.>
 7.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신설 2019.11.11.>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10.17.>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6.>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11.11.><번호이동 2022.10.17.><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26.4.6.>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11.>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 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 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올바른 도로명 주소 표기를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조)
- 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 기간 만료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회 연장할 수 있다
- 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수탁자 선정 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 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수탁자 선정에 대한 정비(다.)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비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032-880-4354 (FAX 032-880-4870)

4. 첨부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출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올바른 도로명 주소 표기를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기관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조)
- 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 기간 만료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회 연장할 수 있다
- 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수탁자 선정 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제4항)
- 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 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수탁자 선정에 대한 정비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비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19조
-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초일 불산입하여 20일 이상(2026. 5월 중)
- 2) 입법선행절차
 -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
 -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예정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2026-84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매소홀로 290번길”을 “매소홀로290번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장”을 “1회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이하“에코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u>매소홀로 290번길 7</u> (학익동)에 둔다.	제2조(위치) ----- ----- ----- <u>매소홀로290번길</u> ----- -----.
제11조(관리·운영) ①·② (생략) ③ 위탁관리·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u> <u>할 수 있다.</u> ④ <u>수탁자 선정 및 타당성 평가는</u> <u>전문성을 가진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u> <u>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u> <u>한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제11조(관리·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회 연장</u> -----. ④ <u>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u> <u>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u> <u>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u> <u>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u> <u>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u>위탁 운영시 수탁자 선정 및</u> <u>수탁자 타당성 평가</u> 4. (생략) ③ (생략)	제15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도로명주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2024.07.08 조례 제1863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880-4051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실 소요 비용 없음)

4. 작성자: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 보 형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자원순환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정비하고자 함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 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정비함
(안 제5조제2항)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032-880-4354 (FAX 032-880-4870)

4. 첨부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6-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출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정비하고자 함

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정비함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초일 불산입하여 20일 이상(2026. 5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2026-84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청장이 되고**”에서 “**부구청장이 되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u>구청장이 되고</u>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부구청장이 되고</u>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u>분기별</u>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반기별</u>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실 소요 비용 없음)

4. 작성자: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 보 형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자원순환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5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국정과제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및 조항 명시(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송의동)

송의보건지소 4층 노인장애인복지과

(2) 연락처: 전화)032-880-7438 팩스)032-880-4369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나.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국정과제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및 조항 명시(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5. 18. ~ 6. 8. [21일간]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본청”을 “법 제21조에 따라 본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쇠</u>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노쇠</u> ----- ----- ----- ----- -----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u>본청</u>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 <u>법 제21조에 따라 본청</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u>통합지원 사업</u>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 <u>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6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위원수 규정 정비
- 나.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지도위원수 10인 이내→20인 이내로 변경(안 제15조)
- 나.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 안 제4장 제20조~27조)
- 다. 운영세칙 제정 근거 신설(안 제5장 제28조)
- 라.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6조)

마.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평생학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미추홀구청 평생학습과
- 전화번호: 032-728-6532 (FAX 032-728-6544)

4.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위원수 규정 정비
- 나.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지도위원수 10인 이내→20인 이내로 변경(안 제15조)
- 나.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 안 제4장 제20조~27조)
- 다. 운영세칙 제정 근거 신설(안 제5장 제28조)
- 라.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6조)
- 마.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제27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5. 18.(월) ~ 2026. 6. 8.(월)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개선 의견	부서 검토 내용
○ 조례안 제3조제1항 -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	○ 조례안 제3조제1항 - 현행 유지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제2편 세부 입안기준(위원회의 구성 규정)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조례안 제3조제3항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대상에 "학부모"를 "학부모 등 보호자" 등으로 개선 제안	○ 조례안 제3조제3항 - 개선의견 반영 - 조례에 개선의견 반영하여 문구 수정
○ 조례안 제16조제1항제6호 - 지도위원의 임무 중 "불우청소년"의 부조·지원 활동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등으로 개선 제안	○ 조례안 제16조제1항제6호 - 개선의견 반영 - 조례에 개선의견 반영하여 문구 수정
○ 조례안제18조 -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교육 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해서 지도위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청소년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수정 제안	○ 조례안제18조 - 현행유지 - 지도위원의 교육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 시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교육으로만 명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행유지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자, 학부모 등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소속기관의 실무자와 주요 청소년관련단체

및 시설, 청소년상담실 실무자 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관련기관, 단체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

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위촉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4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의 순찰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6.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부조·지원활동
7.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방향 제시,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④ 구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도 및 인천광역시 내 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

안 · 행사 진행 등

제21조(구성 및 위촉)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교육(지원)청 · 학교, 청소년단체 · 시설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연령 · 성별 · 지역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⑥ 참여위원회 운영 · 활동 등 각종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2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등)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위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17조 관련)

(앞면)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성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증 동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5.4cm× 세로 8.6cm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붙임 1

관련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평생학습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65호

『용현동 89-3번지 외 12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89-3 외 12필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용현동 89-3 외 12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신영부동산신탁(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6, 8층]
3. 시 공 자: (주)대성건설개발
4.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89-3 외 12필지
 - 나. 대지면적 : 3,395.9㎡
 - 다. 규 모 : 지하 1층~지상 18층, 주1개동 및 부속1개동
공동주택(85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5. 주요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주식회사 대성산업개발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착공 예정일 변경(2025년 12월 31일 → 2026년 7월 6일)
 -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2027년 3월 30일 → 2027년 12월 6일)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6. 5. 11.
7.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계획승인일 ~ 2027. 12. 6.
8.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66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2BL』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2BL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코리아신탁(주) 대표 변문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3. 시 공 자: 현대건설(주)&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주)포스코건설
4.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공동 2BL
나. 대지면적 : 61,177.5㎡
다. 규 모 : 지하 3층~지상 46층, 주7개동 및 부속14개동
공동주택(1,349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5. 주요변경내용
 - 주동 및 지하주차장 기초파일 배치도 변경(PHC파일수량변경 등)
 - 포인트기초 배치 평면도 변경
 - 사업주체 대표자명 변경(이유청 → 변문수)
 - 시공사 상호명 변경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대표자명 변경(정경구, 조태제 → 정경구)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6. 5. 12
7.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계획승인일 ~ 2029. 6. 30.
8.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 2026-67호

-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27-58번지 일대
나. 면적: 4,77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희진)
나.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7-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 5. 1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비고
제물포시장 정비사업	4,771	2,719.6429	36,423.8328	59.14	
	용적률(%)	높이(m)	층수	용도	
	496.12	85	지하4층 / 지상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전용면적(㎡)	형별구분	분양세대수
59.962	59A	23
59.998	59B	22
84.975	84A	92
84.974	84B	44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무상귀속)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부담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	172.7㎡	조합	조합(조성 후 무상귀속)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명칭 : 재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외의 권리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통수	층수	연면적	지분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성명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	1	송의동	27-1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												사무실/철근콘크리트조	1	3	102.61		㈜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	송의동	27-2	대	7.00	7.00			준주거지역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	송의동	27-3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근린시설(당구장)/철근콘크리트조	1	3	136.93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	송의동	27-4	대	46.00	46.00			준주거지역	㈜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											사무실/철근콘크리트조	1	2	47.21		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	송의동	27-5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4.2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	송의동	27-6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9.85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											사무실/철근콘크리트조	1	3	105.72		㈜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	송의동	27-7	대	20.00	20.00			준주거지역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1	송의동	27-8	대	52.00	52.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2	송의동	27-9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7.08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3	송의동	27-10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5	송의동	27-12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3.48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6	송의동	27-13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7	송의동	27-14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8	송의동	27-15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9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7.42		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0	송의동	27-16	대	36.00	36.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15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1	송의동	27-17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9.37		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명칭 : 재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지목	토지						건축물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	층수	연면적	지분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	22	송의동	27-18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3	송의동	27-19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4	송의동	27-20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5	송의동	27-21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6	송의동	27-22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곽**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곽**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7	송의동	27-23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8	송의동	27-24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29	송의동	27-25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0	송의동	27-26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1	송의동	27-27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31		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2	송의동	27-28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31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3	송의동	27-29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4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9.67		남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5	송의동	27-30	대	50.00	50.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변소/철근콘크리트조	1	2	77.85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6	송의동	27-31	대	43.00	43.00			준주거지역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67.17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7	송의동	27-32	대	52.00	52.00			준주거지역	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1.87		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8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1.87		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39	송의동	27-33	대	52.00	52.00			준주거지역	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0	송의동	27-34	대	52.00	52.00			준주거지역	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1	송의동	27-35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2	송의동	27-36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3	송의동	27-37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4	송의동	27-38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명칭 : 재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층수	층수	연면적	지분	소유자		권리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	45	송의동	27-39	대	52.00	52.00			준주거지역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6	송의동	27-40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7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원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8	송의동	27-41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49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원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0	송의동	27-44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1	송의동	27-45	대	82.00	82.00			준주거지역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2	송의동	27-46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3	송의동	27-47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4	송의동	27-49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5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6	송의동	27-50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7	송의동	27-51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8	송의동	27-52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59	송의동	27-56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6.99		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0	송의동	27-57	도로	479.00	479.00	1/4		준주거지역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4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4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4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1	송의동	27-58	대	1,276.00	1,276.00	1/2		준주거지역	원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2			홍**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2	송의동	27-59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4.06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3	송의동	27-60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청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1.28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명칭 : 재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지목	토지				건축물										소유권외의 권리			
		동명	지번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통수	층수	연면적	지분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성명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	64	송의동	27-61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5.8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5	송의동	27-62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2.3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6	송의동	27-63	대	10.00	10.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7	송의동	27-64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1.32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8	송의동	27-65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4.06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69	송의동	27-66	대	53.00	53.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0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5.95	남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1	송의동	27-67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1.32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2	송의동	27-68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4.06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3	송의동	27-69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5.8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4	송의동	27-70	대	10.00	10.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5	송의동	27-71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2.3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6	송의동	27-72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4.07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7	송의동	27-73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점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47.17		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8	송의동	27-74	도로	317.00	317.00	1/4		준주거지역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4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4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1/4			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79	송의동	27-75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0	송의동	27-76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1	송의동	27-77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2	송의동	27-78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3	송의동	27-79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명칭 : 재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지목	토지						건축물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	층수	연면적	지분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또는 사용	84	송의동	27-80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5	송의동	27-81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6	송의동	27-82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7	송의동	27-83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8	송의동	27-84	대	23.00	23.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89	송의동	27-85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0	송의동	27-86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1	송의동	27-87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2	송의동	27-88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3	송의동	27-89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3.25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4	송의동	27-90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5	송의동	27-91		50.00	50.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6													변소/철근콘크리트조	1	2	76.56		남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7	송의동	27-92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9.37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8	송의동	27-93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9.37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99	송의동	27-94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0	송의동	27-95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0.51		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1	송의동	27-96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2	송의동	27-97	대	26.00	26.00				준주거지역	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3	송의동	27-98	대	33.00	33.00				준주거지역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6.36		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4	송의동	27-99	대	30.00	30.00				준주거지역	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56.95		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5	송의동	27-100	대	59.00	59.00				준주거지역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수용 또는 사용	106													첨포,주택/철근콘크리트조	1	2	94.37		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68호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변경없음)
3.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64,671.7m²(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가. 사업시행자: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직무대행자 조승연)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67, 2층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1개월
6. 사업비: 370,064,821,896원(변경없음)
7.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9년 5월 7일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6년 5월 13일
9.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지하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역명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건폐율(%)	비고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48,881.5	9,562.71	188,956.3306	19.56	
	용적율(%)	높이(m)	층수	용도	
	262.6	116.4	-2/40	공동주택 (아파트)	

10.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세 대 수	비고
합 계		1,321	100%
소 계		1,291	97.72%
조합원 및 분양분	51m ² A형	22	1.67%
	51m ² B형	22	1.67%
	59m ²	19	1.44%
	62m ² A형	398	30.13%
	62m ² A형	210	15.9%
	76m ²	471	35.65%
	84m ²	149	11.28%
소 계		30	2.28%
임대분	39	26	1.97%
	51m ² A형	2	0.15%
	51m ² B형	2	0.15%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토지: 378명 / 건축물: 275명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 자 및 부담내용
도로	9,722㎡	도로	8,084.3㎡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 자 부담
공원	1,555.7㎡	녹지	2,750.8㎡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공청사	600㎡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미래형 공공용지	2,641.5㎡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양도 대상면적 (㎡)
1	도화동	460	공	743.70	743.70	743.70
2	도화동	460-1	도	358.40	358.40	358.40
3	도화동	460-2	공	812.00	812.00	812.00
4	도화동	460-3	도	107.10	107.10	107.10
5	도화동	465-11	도	5.80	5.80	5.80
6	도화동	465-12	도	1,726.80	1,726.80	1,726.80
7	도화동	465-13	도	116.90	116.90	116.90
8	도화동	465-14	도	50.60	50.60	50.60
9	주안동	600-1	도	50,537.30	6,757.20	6,757.20
10	주안동	600-4	도	49.20	49.20	49.20
11	주안동	600-5	도	21.50	21.50	21.50
12	주안동	600-6	도	8.60	8.60	8.60
13	주안동	600-12	도	27.40	27.40	27.40
14	주안동	600-13	도	26.10	26.10	26.10

13. 기타 관계도서 우리 구 도시재생과(☎032-880-7948)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69호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 외 17필지 일대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57-47번지 일대 (외 17필지)
- 나. 면 적 : 4,039.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2027년 3월
 - 나. 준공 예정일 : 2030년 2월
-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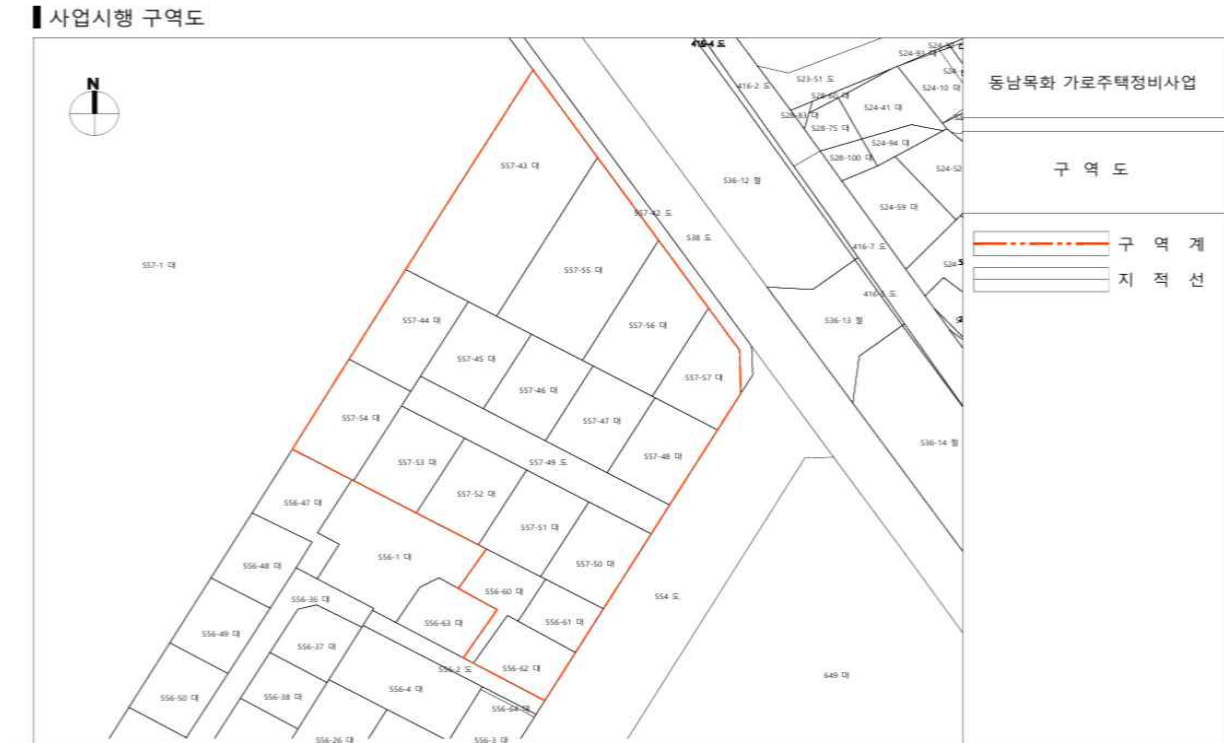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명 칭 :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0, 301호

5.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23조의3 참고)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7. 관계도서: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동남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4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변경 및 신규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신규 지정

골목형 상점가명	상인회(대표)	위 치	규모	결과
토지금고낙섬 골목형상점가	토지금고낙섬상인회 (대표:조경자)	토금중로 33(용현동) 일원	- 면적 5,586.86㎡ - 점포 98개	지정

□ 구역 변경

골목형 상점가명	상인회(대표)	위 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인하문화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인하문화의거리상인회 (대표:하희철)	경인남길30번길 37-1(용현동) 일원	○ 인하문화의거리 - 면적: 3,920.025㎡ - 점포: 120개 ○ 인하대후문 - 면적: 3,928.89㎡ - 점포: 60개	- 면적: 9,809.515㎡ - 점포: 180개

※ 인하대후문골목형상점가와 합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66호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 5. 15.~2026. 5. 31.(16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	수량	위반 장소	보관일시 및 장소	취급자	비고
리어카, 손수레, 의자 등	3종	인하로257번길 30 남광로알아파트 코너	2026. 5. 15.~2026. 5. 31.(16일간) 미추홀구 학익동 적환장 (학익동 401-86)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6. 물품처리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미추홀구에 귀속·폐기 처리되며,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032-880-4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도로관리청: 미추홀구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cm)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 장소	⑧ 취급자 성명	⑨ 비고
2026-004	리어카	개	1	2026. 5. 11.	학익동 401-86	로얄아파트 코너 앞	미추홀구 도시경관과 계율	
	손수레	개	3					
	의자	개	2					
	이		하		여		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적치물 목록

연번	위반장소	위반사진(도로법제74조 의거 대집행)
1	위치도	
	인하로257번길 30 남광로알아파트 코너	 Galaxy Z Fold6 2026년 5월 11일 오후 1:4
	학익동 401-86 (보관사진)	 Galaxy Z Fold6 2026년 5월 11일 오후 2: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874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도화동 109-1번지 일원 “성락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명 칭

(당 초) 성락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변 경) 성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시 행 자

(당 초) 성락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경) 성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다.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19-15, 2층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21년 9월 ~ 2031년 9월

마. 주요변경 사항: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조합정관 등 변경

2. 공람개요

가.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역

나. 공람기간: 2026. 5. 18. ~ 2026. 6. 1. (14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다.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4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875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도화동 105-1번지 일원 “태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명 칭

(당 초) 태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변 경) 태화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시 행 자

(당 초) 태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경) 태화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다.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32-1, 3층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22년 12월 ~ 2032년 12월

마. 주요변경 사항: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조합정관 등 변경

2. 공람개요

가.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역

나. 공람기간: 2026. 5. 18. ~ 2026. 6. 1. (14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다.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 032-880-4484